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학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680

발의연월일: 2024. 9. 5.

발 의 자:이학영・임호선・윤건영

박홍근 • 김현정 • 박정현

한정애 · 정준호 · 진선미

전재수 · 한민수 · 문금주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의 하나로 계약을 이행할 때에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른 안전·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2022년 1월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이 시행되는 등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제도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「산업안전보건법」 또는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안전·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사망사고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및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에 대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려는 것임(안 제27조제1항제8

호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학영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」(의안번호 제3679호) 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.

제27조제1항제8호 중 "「산업안전보건법」"을 "「산업안전보건법」 또는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"로, "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"을 "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"으로 하고,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

나.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) 제27조제1 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27조(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27조(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) ① 각 중앙관서 자격 제한 등) ① -----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(이하 "부정 당업자"라 한다)에게는 2년 이 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 격을 제한하여야 하며, 그 제한 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 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 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다. 1. ~ 7. (생략) 1. ~ 7. (현행과 같음) 8. 계약을 이행할 때에 「산업 8. -----안전보건법」에 따른 안전·보 안전보건법」 또는 「중대재 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 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| ---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대 ----다음 각 목의 어느 한 위해를 가한 자 하나에 해당하는---<신 설> 가.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

	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
	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
<u> <신 설></u>	나.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
	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
	<u>이 있는 자</u>
9. (생 략)	9. (현행과 같음)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